

개정 전	개정 후
<p>한다)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까지 감면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</p>	<p>----- -----<u>2028년 12월 31일</u>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p>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<u>소유자</u>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</p>	<p>3. ----- ----- <u>소유자</u> <u>(상속인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재개발사업”이라</p>	<p>⑤ ----- ----- -----</p>